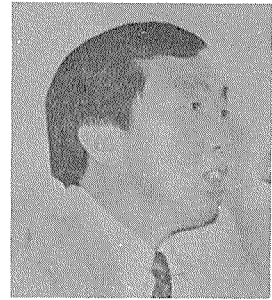


#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 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I)



산업연구원  
유 학 상 박사

## I.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에 대한 기본개념

### 1. FTA의 정의

FTA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해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를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다. 이것은 협정당사국 사이에만 자유무역을 인정하고 역외국과의 교역에는 각 협정국이 독자적으로 무역정책권한을 보유한다. 따라서 비협정국에 대해 공동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과는 다르다.

FTA는 해당국간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은 제한적이어서 공동시장 (Common Market)보다는 포괄범위가 좁다고

하겠다. 또한 FTA는 경제통합 (Economic Integration)의 최초단계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EC 통합추진은 최종단계라 할 수 있는 바, EC 통합은 상품·서비스 등의 회원국간 이동 자유화는 물론 표준·기술규격의 통일, 조세제도의 통일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단일 국가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 2. FTA의 종류

#### 1) 포괄적 협정 (Comprehensive FTA)

FTA는 양국간 상품교역의 거의 전부분에 걸쳐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 무역관련투자, 지적재산권 등 비 재화부문의 일부 또는 전부도 포함 이 가능하다.

포괄적 협정일 경우 장점으로는 자유무역 효과 극대화, 전산업에 걸친 구조조정 (산업의 효율성제고), GATT 24조 규정과 합치된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국내산업 구조조정비용이 막대 (경쟁력 취약부문의 실업발생 등)하고 무역 전환효과가 발생 (보다 능률적인 제3국으로 부터의 수입을 저지)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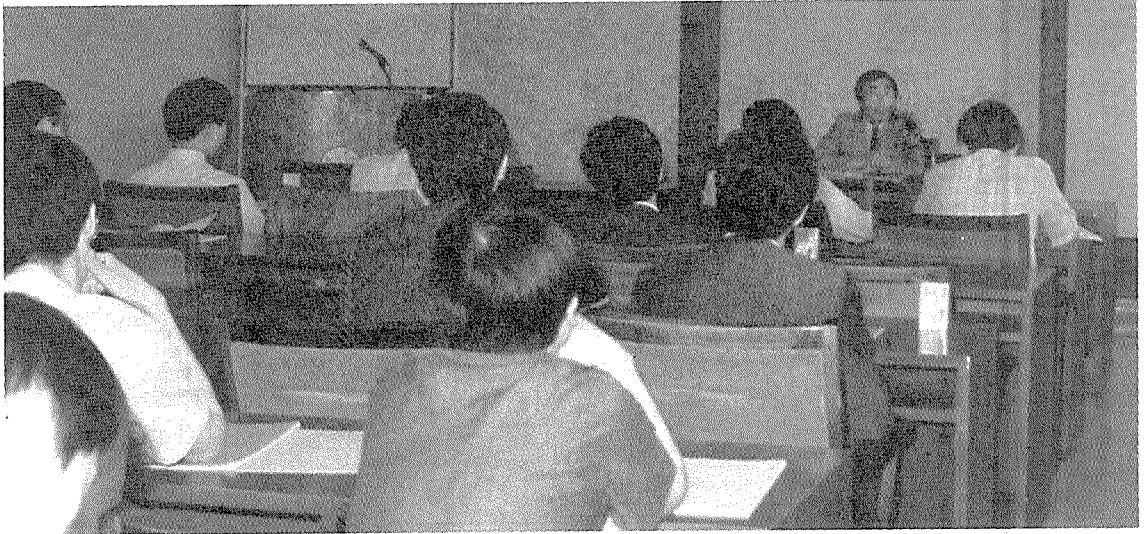
예 : 미-이스라엘 FTA (1985), 미-캐나다 FTA (1988)

#### 2) 부문별 협정 (Sectoral FTA)

양국이 합의하는 특정산업부문 또는 특정상

편집자주 : 본고는 지난 8월 28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산업연구원 유학상 박사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 내용이다.

이에 본고를 (I), (II)회로 나누어 연재하오니 참고하기 바란다.



〈표-1〉 경제통합의 형태

구분	내용	예
1.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2개국 이상의 국가간 상호 관세 인하 또는 철폐, 비관세장벽제거로 역내 국가간 자유무역실현 -역외국에 대한 독자적인 관세 및 비관세정책 유지	•EFTA •미·카·FTA •북미 FTA
2. 관세동맹 (Customs Union)	○자유무역지대 단계에 추가하여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 적용 (비관세 정책은 유지) -관세정책에 관한 한 단일 경제단위	
3. 공동시장 (Common Market)	○역내국가간 자유무역, 공동관세 적용에 추가, 역내국가간에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이동 자유	•CARICOM (카리브 공동시장)
4. 경제동맹 (Economic Union)	○공동시장 단계에서 발전, 금융, 재정, 운수, 사회복지 등 제분야의 경제정책 조정 및 협력으로 공동 경제정책 수행	•현재의 EC는 공동시장과 경제동맹의 중간단계
5. 완전경제통합	○역내국가간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 동 기구가 모든 사회, 경제정책을 조정, 통합, 관리 -경제적으로는 단일국가 -초국가동맹 (Supra National Union)	•통합후의 EC

품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는 것인데, 산업구조조정상의 마찰과 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유무역의 이익을 획득하며 무역전환효과로부터의 부작용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단점으로는 양국간 상호이익의 부분을 발견하는 어려움이 있고 GATT에서의 의무면제(Waiver)를 얻기가 곤란하다.

예 : 미-캐나다 자동차 협정 (Auto Pact) (1965)

### 3) 기능별 협정 (Functional FTA)

정부조달, 긴급수입제한조치, 보조금, 무역 관련투자 등 양국간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협정인데 용이하게 시행이 가능하고 (대체로 그 효과가 전산업에 파급, 특정부문 결사반대 적용), GATT상 의무면제 필요없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양국간 통상환경의 개선효과를 장점으로 하고 있으며, 무역 자유화의 효과가 제한적이며, 협정결과 서로 균형있는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협상대상을 발견키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예 : 미-캐나다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1984), 미-멕시코 분쟁해결에 관한 협정 등

### 3. GATT와의 관계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는 자유무차별 다자간협상을 원칙으로 하여 2차대전후 세계무역 질서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FTA는 역내국가에만 별도의 관세, 비관세 조치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 원칙(MFN)에 위배되나, GATT 제24조 규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FTA와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협정국간 "실질적인 모든 교역"에 대해 관세 및 기타무역제한조치의 철폐(부분적 특혜의 배제)한다.

상기 제한의 철폐는 "합리적 기간(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제3국에 대하여 협정체결 전보다 불리한 대우를 금지한다.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라도, GATT회원국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의무면제: Waiver) GATT내의 자유무역권 협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 2.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의 추진현황과 전망

### 1. 추진 일정

- '91.2.5 미, 카, 멕 3국 정상, 북미 FTA추진 공식 발표
- '91.5.24 미의회에서 북미 FTA협상에 관한 Fast-Track 연장안 통과
- '91.6.12 3국 통상장관, 북미 FTA 협상개시 (터론토)
  - 미국 대표: Carla Hills USTR
  - 캐나다 대표: Michael Wilson  
대외무역장관
  - 멕시코 대표: Jaime Serra Puche  
상공장관
- '91.8.19 제2차 회의(시애틀)
- '91.10 제3차 회의(멕시코시티)
- '91말 협상종결
- '91초 협정안 의회 상정
- '92말 또는 '93초 협정발효

### 2. 추진배경 및 협정당사국의 입장

<미 국>

#### 1) 대외적인 측면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화 추세속에서 주도권 확보경쟁

-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EC, 일본의 경제력은 강화되어 3국 체제를 형성
- EC: '92시장통합, EFTA국가의 EC가입추세 및 유럽경제권(EEA) 형성움직임
- 일본: 지속적인 경제활력을 배경으로 아시아지역 경제권에서의 주도권 확보 노력
- 미국이 상대적 경제력 약화 반전을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 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역주의적 전략을 선택

-UR의 다자간 협상에서의 입지강화

- GATT의 다자간협상의 지연 또는 비효율성에 대한 대체적 수단
- 미국은 FTA추진이 UR참가국의 반발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FTA 비참여국에 대해 무역권 광역화 동참기회 박탈위험을 실감케하여 오히려 UR에의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미국은 GATT 다자주의와 FTA에 의한 지역주의(GATT-PLUS방식)를 병행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FTA추진 강도는 UR 진전속도와 밀접한 연관예상

#### 2) 대내적 측면

-미국의 기술력과 자금,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저장되어 있는 국민경제에 새로운 발전의 Momentum 부여

-기존 미-카 FTA의 내용을 가급적 존중하되 북미 FTA 협상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미-카 FTA도 수정되어야 한다는 입장

- 특히 제3국의 멕시코를 경유한 대미우회 수출을 통해 북미 FTA의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Free Rider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안점

<멕시코>

○ 총교역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시장에의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접근 보장

○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추진(약 1천억달러로 추산되는 해외도피 자금의 멕시

코 환류효과도 기대)

-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 규정 조항으로 외국의 대멕시코 투자의 불리한 영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  
(캐나다)
- 미국의 멕시코로의 무역전환효과 및 투자전환효과를 최소화시키면서 기존 미-카 FTA의 효과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수세적 입장에서 협상에 참여
- 현 미-카 FTA보다 캐나다측에 불리한 내용이 새로이 규정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
- 미국에 원산지규정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불리한 입장

### 3. 협상의 포괄범위

- 현재 시장접근, 무역규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 6개분야를 대상으로 17개 협상그룹을 구성, 협상진행중
  - 공산품, 농산품 등 상품교역 뿐 아니라 투자,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을 모두 포괄하는 미-카 FTA의 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 단, 국가별로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미국의 이민분야, 멕시코의 석유, 광업 등 에너지 분야)

○ '91.5 미행정부는 Fast-Track을 연장시키기 위해 북미 FTA관련 미회의의 주요 관심사항인 원산지규정, 노동, 환경문제에 대한 협상계획(Action Plan)을 의회에 제출

- 원산지규정 : 멕시코에서의 조립 공정만 거쳐 미국에 수출하는 제3국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원산지 규정 강화

- 노동

- 노동력의 이동 및 이민법은 협상에서 제외
- 북미 FTA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전직에 대한 사전대책 수립
- 멕시코 근로기준관련법규 이행 촉구

- 환경

- 멕시코의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강화 촉구
-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

### 4. 협상전망

현재 미국, 멕시코 양국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만큼 예정대로 금년말까지는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미-카 FTA 협상에 소요되었던 18개월보다 짧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92.11월 대통령선거 이전에 의회 비준까지 마치고자 할 것이며, EC시장 통합완성 이전에 협상을 타결시켜 지역경제통합에서의 자국의 의지를 과시하려고 할 것이다.

